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사업』
**2026년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기업지원사업(기술지도) 모집 공고**

중고로봇 재제조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과 김해시가 지원하는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로봇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수혜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 지원개요

가. 지원목적

- 로봇 재제조 관련 기업의 기술 역량 증대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고로봇 산업 관련 기업 기술지원

나. 지원규모

- 기술지도 지원 : 총 16건 (3백만원 이내/건)

2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중고 로봇 재제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연구소, 협회 등) 등에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

나.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년 10월까지

- ※ 세부수행기간은 지원프로그램별 협약 및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명	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지원 금액
중고로봇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기업지원	기술지도 (1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로봇 재제조 관련 기술 지도 및 컨설팅 지원 (기술지도 전문가 매칭) 중고로봇 관련 공정기술, 로봇티칭기술 관련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기술지도 	최대 3백만원/건

라. 세부 지원내용

○ 기술지도 지원: 기술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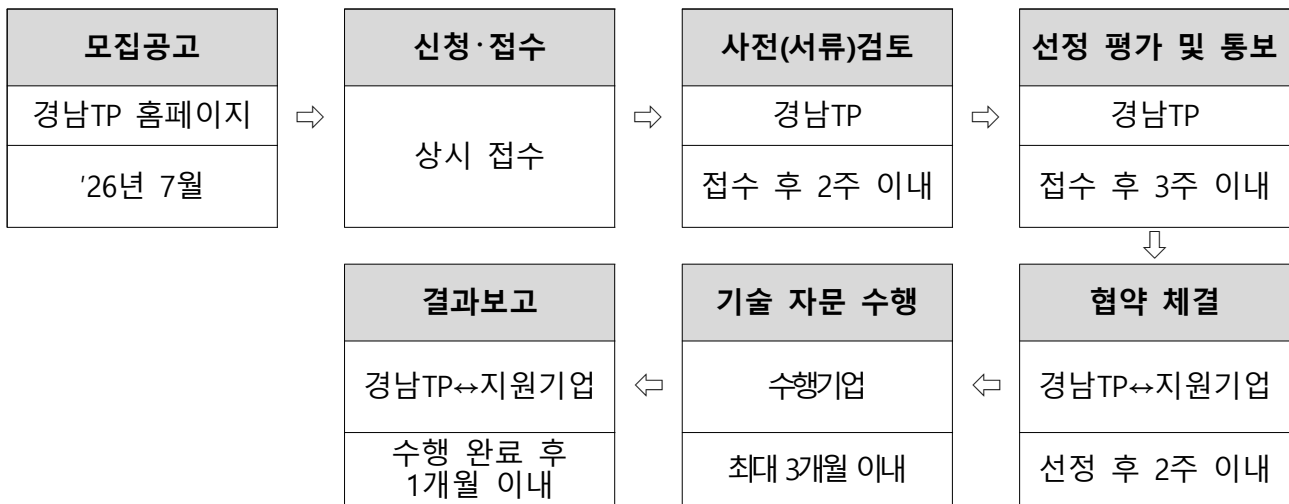
- 중고로봇 재제조 관련 공정기술, 로봇티칭기술에 관련된 전문가 기술 컨설팅 지원, 기술적 문제해결, 최적화 방안 제시 등 지원
- 기업 맞춤형 기술 개발 방향성 제안 등 기술지원

3

지원절차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기술지도 지원



※ 상기 절차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가.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6. 7월 ~ 상시 접수 (지원 마감 전까지)

나. 접수방법

- 기술지도 지원기업: 홈페이지 접수
 - 신청방법(접수): <https://www.krc.or.kr/re-shop/support/plan/32> 접속 후 → 작성하기 → 제출하기(기업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이메일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원본은 추후 사업 선정 시 제출

다. 문의처

부서(팀)	성명 / 직위	연락처	이메일
지능기계본부 (로봇산업팀)	박황재 책 임 유광종 연 구 원	055-272-0817 055-719-0083	phj84@gntp.or.kr kwang1212@gntp.or.kr

5 | 제출서류

2026년 로봇 재제조산업 기업지원 사업 기술 자문 과제 협약 서식 목록

제출서류	필수 여부	
	기술 자문	비고
[서식 1] 기술 자문 신청서	○	접수 시
[서식 2] 기술 자문 계획서	○	협약 이후
[서식 3] 기술 자문 일지	○	
[서식 4] 기술 자문 결과 보고서	○	
[서식 5] 자문위원 수당 지급신청서	○	

6

신청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가. 신청 제외대상

: 사전검토 결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제17조제 1항 및 별표2에 따라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청 자격, 중복 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은 최근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 또는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나. 유의 사항

- 1) 공동기술개발계획서 제출 시 주요 고려항목은 사업 목적 부합성, 내용의 적합성, 원천·핵심 기술 확보 가능성, 중복성 여부 등임
- 2)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서 제안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

- 3) 다음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함

- 전산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한 경우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제출이 아닌 개별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 ※ 예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 공동기술개발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 첨부된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 첨부파일의 붙임1.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바라며, 접수서식의 파일이 아닌 첨부파일 붙임2의 공동기술개발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접수 요망

4)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지원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됨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 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을 징구함

5) 이의신청

-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다. 관련 법(법령)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라.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한국로봇사용자협회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내부지침」
- 한국로봇사용자협회 「평가위원 통합관리 내부지침」
-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7 사전 지원 제외 기준 (신청 자격 검토)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 기준

구분	내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既往발. 既往지원 연구개발 과제와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동운영요령 제2 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참여 제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사전지원제외</th> <th>사후관리</th> </tr> </thead> <tbody> <tr> <td>검토 기준</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미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 회생절차 개입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면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td> <td>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회계연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 견이 "한정" </td> </tr> </tbody> </table>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미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 회생절차 개입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면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회계연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 견이 "한정"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미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 회생절차 개입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면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회계연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 견이 "한정" 					

구분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72 286 368 338">구분</th> <th data-bbox="368 286 943 338">사전지원제외</th> <th data-bbox="943 286 1377 338">사후관리</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72 338 368 1099"></td> <td data-bbox="368 338 943 1099"> <p>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p> <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p> <p>※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p> <p>※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p> <p>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p> <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p> <p>※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p> <p>※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p> <p>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절”</p> </td> <td data-bbox="943 338 1377 1099"></td> </tr> <tr> <td data-bbox="272 1099 368 1368">조치</td> <td data-bbox="368 1099 943 1368"> <p>○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p> </td> <td data-bbox="943 1099 1377 1368"> <p>○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p> <p>○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p> <p>- 지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p> <p>○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p> </td> </tr> </tbody> </table>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p>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p> <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p> <p>※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p> <p>※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p> <p>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p> <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p> <p>※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p> <p>※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p> <p>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절”</p>		조치	<p>○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p>	<p>○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p> <p>○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p> <p>- 지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p> <p>○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p>	<p>-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p>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p>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p> <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p> <p>※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p> <p>※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p> <p>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p> <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p> <p>※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p> <p>※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p> <p>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절”</p>										
조치	<p>○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p>	<p>○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p> <p>○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p> <p>- 지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p> <p>○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p>									
의무사항 불이행	<p>-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p>										